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방송프로그램 편성 규제 완화 〉
■ 김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086호)

2026. 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보도·교양·오락프로그램 편성비율 규제 완화	3
가. 개정안의 내용	3
나. 검토의견	5
다. 정부 및 이해관계자 의견	12
2. 1개국 수입물 편성비율 상한 폐지	14
가. 개정안의 내용	14
나. 검토의견	16
다. 정부 및 이해관계자 의견	19
3.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 규제 완화	21
가. 개정안의 내용	21
나. 검토의견	23
다. 정부 및 이해관계자 의견	29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현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6. 5. 29.

다. 회 부 일 : 2026. 7.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미디어 환경이 OTT, 온라인 중심의 다매체, 다채널 시장으로 재편되고 콘텐츠 시청 행태가 수동적, 실시간 행태에서 능동적, 비실시간 행태로 변화함에 따라 과거의 방송 환경에서 마련된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매체 간 규제 불균형을 개선하고 방송사업자의 편성, 제작에 있어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함으로써 방송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도·교양·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규제(현행 대통령령에 따라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상한 규제)를 폐지함(안 제69조제3항).

- 나.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간 방송되는 외국 수입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중 한 국가에서 제작한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편성비율 상한 규제를 폐지함(현행 제71조제4항 삭제).
- 다. 전체 방송프로그램 중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 규제를 적용받는 방송사업자의 범위 등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하고, 전체 방송프로그램 및 주시청시간대 중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 규제 대상에서 지역방송사업자 등을 제외함(안 제72조제1항 및 제3항).

Ⅲ. 검토의견

1. 보도·교양·오락프로그램 편성비율 규제 완화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보도·교양 및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야 하는 의무편성 비율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3항 등).

현 행	개 정 안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 ①. ② (생 략) ③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때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도·교양 및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야 하고, 그 방송프로그램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여야 한다.</u>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시청시간대(이하 “주시청시간대”라 한다)에는 특정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이 편중되어서는 아니된다. ④ ~ ⑫ (생 략)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u>보도·교양 및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u> ----- ----- ----- ----- ----- ----- ----- ----- ----- ④ ~ ⑫ (현행과 같음)
제10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의2. (생 략) 4. 제6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자	제108조(과태료) ①----- ----- ----- ----- 1 ~ 3의2. (현행과 같음) 4. 제69조제4항----- ----- -----

현행	개정안
5. ~ 28. (생략) ②·③ (생략)	5. ~ 28.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69조제3항은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용사업자(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편PP)는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도¹⁾·교양²⁾ 및 오락³⁾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방송법 시행령」은 방송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텔레비전·라디오방송사(지상파DMB 제외)는 오락프로그램을 반기별 전체 방송시간 기준 60% 이하, 데이터방송사는 반기별 전체 방송내용물 기준 60%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정⁴⁾하고 있음.

- 또한, 주시청시간대(평일 19~23시 및 토·일·공휴일 18~23시)에는 특정 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이 편중되어서는 아니됨.

○ 이러한 방송분야별 편성 비율 규제는 시청자가 오락뿐만 아니라 다큐, 시사, 교양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환

1)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국내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전반에 관하여 시사적인 취재보도·논평 또는 해설 등의 방송프로그램

2)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국민의 교양향상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과 어린이·청소년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3)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국민정서의 함양과 여가생활의 다양화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4) 「방송법 시행령」

제50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①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법 제69조제3항 전단에 따라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및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되, 그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및 라디오방송프로그램의 경우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해당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하로 편성할 것. 다만,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60 이상으로 편성할 수 있다.

2. 데이터방송프로그램의 경우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해당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내용물의 100분의 60 이하로 편성할 것

경을 조성하고,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저비용·고효율의 자극적인 오락 방송프로그램만을 편성하는 대신 보도·교양 방송프로그램을 일정 수준 편성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하도록 의무화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던 것임.

- 그러나, 동 규제가 방송사업자에게만 비대칭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제작·편성할 수 있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 비해 방송사업자의 편성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시장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방송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방송분야별 편성 규제를 삭제함으로써,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조응하여 방송사업자와 OTT 간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보임.
- 개정안에 관하여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시청자의 콘텐츠 소비 행태 변화에 따라 방송분야별 편성 비율 규제가 지닌 실효성과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방송시장이 매체의 희소성에 기반한 독과점 구조를 취하던 2000년 통합 방송법 제정 당시에는 방송분야별 편성 규제가 엄격히

적용되었으나,⁵⁾ 규제가 방송산업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오락 편성 비율 상한을 60%로 높이는 등 점진적으로 규제 완화가 이루어져 왔음.

○ 이러한 규제 완화 흐름에도 불구하고 현행 방송분야별 편성 규제가 여전히 방송사업자의 자유로운 편성권을 침해하여 방송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음.

○ 특히, 시청자의 미디어 이용 방식이 방송사가 편성하여 송출하는 프로그램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에서, VOD·FAST⁶⁾ 서비스나 OTT 플랫폼을 통해 원하는 콘텐츠를 원하는 시간대에 주도적으로 선택·시청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방송사가 편성하는 특정 방송분야의 비율을 제한하는 것의 실효성이 미미해진 상황임.

- 「2025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방미통위, 2025.12.)에 따르면 OTT 이용 성향 1~3위는 검색 시청, OTT 추천 프로그램 시청, TV에서 놓친 프로그램 다시보기 시청이었고, 「2025 콘텐츠 이용행태 조사」(콘텐츠진흥원, 2025.12.)에 따르면 OTT 구독 이유 중 1~3위가 콘텐츠 종류의 다양성(75.7%), 시간·장소 제한 없이 이용가능(64.1%), OTT에서만 제공하는 콘텐츠

5) 보도방송 10% 이상, 교육방송 30% 이상, 오락방송 50% 이하로 의무화

6) FAST(Free Ad-supported Streaming Television)란 광고를 시청하는 대신 비용 없이 인터넷으로 실시간 채널과 비실시간(VOD) 채널을 시청할 수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말함.

감상(60.2%)이었다는 점에서 미디어 이용방식이 변화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 2018년 1월 이후 방송분야별 편성 비율 규제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가 전무하다는 점 또한 최근 들어 동 규제가 사실상 형해화된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참고로, 최근 10년간(2016~2025년)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편 PP의 오락프로그램 편성 비율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최근 10년간(2016~2025년) 오락프로그램 편성비율 현황 >

(단위: %)

연도	지상파				종편PP			
	KBS1	KBS2	MBC	SBS	JTBC	TV조선	채널A	MBN
2016	11.9	45.9	42.3	42.3	35.5	33.3	39.8	32.1
2017	11.7	46.4	43.6	43.1	44.1	31.7	37.3	30.3
2018	12.2	46.7	44.7	41.6	44.8	39.8	38.6	33.9
2019	11.6	46.8	45.4	42.2	46.0	36.9	38.8	32.7
2020	8.2	46.4	43.5	44.5	46.6	34.3	37.8	37.0
2021	7.4	47.9	44.6	44.2	48.3	31.0	36.3	36.3
2022	7.4	55.5	45.4	41.9	49.2	27.8	41.7	34.4
2023	7.5	57.4	43.3	40.2	53.8	28.3	40.0	36.1
2024	9.0	56.7	43.4	40.9	52.4	27.9	31.3	36.0
2025	9.8	57.1	41.8	46.0	50.6	25.3	30.5	35.0

주: 2022년부터 '매월 50% 이하'에서 '매반기 60% 이하'로 완화됨.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이처럼 규제의 실효성이 저하된 점을 고려할 때, 방송사업자의 편성의 자유 보장, OTT와의 규제 형평성 제고, 시청자의 콘텐츠 선택권 확대라는 측면에서 방송분야별 편성 비율 규제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둘째, 다양한 융합형 콘텐츠의 확산으로 오락 등 방송분야 간
구분이 모호해지고 실무적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점에서 규
제 완화 또는 폐지가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현재는 방송사업자가 자체 기준에 따라 오락프로그램 여부를 자
율적으로 구분한 후 방미통위 소속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에서 점검하고 있는데, 콘텐츠 제작 환경 변화로 보도·교양과 오
락 방송프로그램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에서 방송분야 구분
기준의 명확성을 두고 혼란과 행정력 낭비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 아울러,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다양한 크리에이터 등장으로 인
해 향후에는 전통적인 분류체계로 포섭이 불가능한 콘텐츠가 더
욱 증가할 수 있다고 보임.
 - 예를 들어, 메타버스 상에서 게임을 통해 역사·문학 내용을 전
달하는 콘텐츠 등 교양 분야인지 오락 분야인지 명확히 구분
하기 어려운 콘텐츠가 등장할 수 있음.
- 구분의 실익이 줄어든 오락 방송프로그램을 따로 분리하여 편성
비율을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는 기술 발전과 시장 변화에 부합
하지 않는 지체된 규제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규제를 폐지하려는
개정안은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보임.

- 셋째, 오락 편성 비율 규제 폐지가 시장성이 낮은 순수 보도·교양 방송프로그램의 소멸을 가속화하고 창작 생태계를 고사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상업적 이익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방송시장 특성상, 편성 규제가 일시에 폐지될 경우 방송사업자 입장에서는 제작 단가가 높고 광고 효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정통 다큐멘터리나 시사 교양 프로그램 편성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음.
- 이러한 편성의 쏠림 현상은 장기적으로 중소 보도·교양 전문 제작사의 경영 악화로 이어져 방송 생태계의 다양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
- 실제로 협회 등 현장 일선에서는 최소한의 법적 보장책인 의무 편성 비율마저 사라질 경우 장르 편중이 심화되어 외주제작사 및 제작 인력의 생존과 존립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음.⁷⁾
- 또한, 등록·신고만으로 시장 진입이 가능한 일반PP와 달리 종합 편성채널인 종편PP는 다양한 방송 분야를 균형 있게 편성하는 것을 전제로 방미통위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업자라는 점에서, 편성 규제 폐지가 오락 방송프로그램 비율의 지나친 확대를 가져올 경우 방송의 다양성 확보라는 종합편성채널 제도 고유의 취지를 형해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 대다수 종편PP의 오락프

7) 본 검토보고서 12-13p 참고

로그램 편성비율이 20~30%에 불과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넷째, 개정안이 여전히 제69조제3항 후단에 따라 주시청시간대에 적용되는 방송분야별 편성 규제를 존치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동 개정안은 오락 방송프로그램 편성 규제를 폐지하면서 주시청시간대에 특정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이 편중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규제는 존치시키고 있는데, 이는 시청율이 높은 시간대의 방송 다양성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는 유지하려는 취지로 보임.
- 방송사업자 입장에서는 주시청시간대에는 규제가 적용되어 편성 규제 완화의 체감도가 반감될 여지도 있으나, 「방송법 시행령」 및 「방송프로그램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에서 주시청시간대의 방송분야별 편성 규제의 세부 사항과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아 현재에도 실질적인 규제로 작용하고 있지 않으며, 안 제108조제1항제4호에서도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69조제3항을 제외하고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 정부 및 이해관계자 의견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동의) OTT 등 매체와 채널 다양화로 오락물을 쉽게 접할 수 있고, 장르 융·복합 현상으로 장르 구분이 모호해진 현재에는 규제의 의미가 퇴색된바, 개정안에 동의함.
- (문화체육관광부: 신중검토) 수익성이 낮은 교양, 시사 등 공익적 콘텐츠 대신 광고수익 창출에 유리한 프로그램 편성이 집중될 경우 콘텐츠 다양성이 위축되고, 다큐·교양 제작사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며, 종합편성채널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현행 유지가 필요함.
- (KBS: 수정 동의) 최근 방송콘텐츠 장르 간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있어 장르의 융합과 진화를 통해 콘텐츠 창의성 확대와 경쟁력 제고가 필수적임에도 장르를 획일적으로 구분하고 장르별 균형을 강제하는 규제체계는 혁신을 제약하기에 여전히 주시청시간대에 적용되는 편성규제 또한 폐지가 필요함.
- (㈈광주방송: 동의) 보도-교양-오락 구분 형식은 사문화되었고, 현재는 보도-교양-오락이 혼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기획·제작되고 있는 만큼 편성규제를 폐지하는 개정안에 찬성함.
- (MBN, 채널에이, TV조선: 동의) OTT 및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한 미디어 생태계 속에서 과거의 경직된 편성규제를 합리

적으로 개선하여 국내 방송산업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시청자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규제 완화에 찬성함.

- (한국방송협회: 수정 동의) 편성규제를 전향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나, 제69조제3항 후단이 존속되는 한 주시청시간대에는 보도·교양·오락프로그램 편성 의무를 계속 부담하게 되므로 체감되는 규제 완화 효과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후단을 존치시키는 것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한국독립PD협회: 신중검토) 오락 상한 폐지 시 시장 논리에 따라 오락·예능 편성이 집중됨에 따라 다큐·교양 제작 인력 생존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개정안에 반대함.
-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신중검토) 교양, 오락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외주제작사에 대한 생존과 존립에 영향이 갈 수 있으므로 개정안에 반대하며, 방송사와 외주제작사의 공존 성장 방향의 방안이 보완되어야 함.

2. 1개국 수입물 편성비율 상한 폐지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중 특정 1개 국가에서 수입되는 콘텐츠의 편성비율 상한 규제를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4항 삭제 등).

현 행	개 정 안
제71조(국내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① ~ ③ (생략) ④ <u>방송사업자는 다양한 국제문화 수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간 방송되는 외국 수입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중 한 국가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u>	제71조(국내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u><삭 제></u>
⑤ (생략)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 등의 구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편성비율은 방송매체와 방송분야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⑤ (현행과 같음) ⑥ ~~-----제3항-----~~ ----- ----- ----- ----- -----.
제10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08조(과태료) ①----- ----- -----.
1 ~ 7의3. (생략)	1 ~ 7의3.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8. 제7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자	8. -----제3항----- ----- -----
9. ~ 28. (생략)	9. ~ 28.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71조제4항은 연간 방송되는 외국 수입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이하 “수입물”이라 함) 중 특정 국가로부터의 수입물이 일정 비율 이상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방송법 시행령」 및 방미통위 고시는 그 비율을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수입물 방송시간의 90%로 정하고 있음.⁸⁾
 - 다만, 특정한 한 국가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방송분야로 등록·신고⁹⁾하였거나 연간 수입물 편성 건수가 4편 이하 또는 240분 이내인 경우에는 규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이러한 1개국 수입물 편성 비율 규제는 시청자가 특정 국가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제문화 수용의 다양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던 것임.

8) 「방송법 시행령」

제57조(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⑤ 방송사업자(특정한 한 국가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방송분야로 등록 또는 신고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는 법 제71조제4항에 따라 한 국가에서 제작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분야별로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외국 수입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방송시간의 100분의 90 이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편성해야 한다.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고시)

제8조(수입한 외국의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중 한 나라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의 편성비율) 영 제57조제5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중 1개 국가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을 분야별로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방송시간의 100분의 90을 초과하여 편성할 수 없다. 다만,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을 연간 각 4편 또는 각 240분 이내로 편성한 방송사업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9) 2026년 8월 기준 채널W(일본문화), 중화TV(중화문화 및 보조적데이터방송)가 이에 해당함.

- 그러나, 동 규제가 방송사업자에게만 비대칭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특정 국가로부터의 수입 콘텐츠를 제한 없이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 비해 방송사업자의 편성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시장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방송사업자에게 적용되는 1개국 수입물 편성 규제를 삭제함으로써,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조응하여 방송사업자와 OTT 간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보임.
- 개정안에 관하여, 시청자의 콘텐츠 소비 행태 변화에 따라 1개국 수입물 편성 비율 규제가 지닌 실효성과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 폐지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음.
- 방송시장이 매체의 희소성에 기반한 독과점 구조를 취하던 2000년 통합 방송법 제정 당시에는 1개국 수입물 편성 규제가 엄격히 적용되었으나, 규제가 방송산업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1개국 수입물 편성 비율 상한을 높이고 산정 기간을 조정하는 등 점진적 규제 완화가 이루어져 왔음.¹⁰⁾
- 이러한 규제 완화 흐름에도 불구하고, 현행 1개국 수입물 편성 규제가 여전히 PP 등 방송사업자의 유연한 수급 계약과 편성권 행사를 제약하여 방송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요소가 되고 있다는

10) 매월 60%이내 → 매분기 60% 이내 → 매반기 60% 이내 → 매반기 80% 이내 → 매년 90% 이내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특히, 시청자의 미디어 이용 방식이 원하는 콘텐츠를 원하는 시간대에 주도적으로 선택·시청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방송사가 편성하는 특정 국가로부터의 수입물 비율을 제한하는 것의 실효성이 낮아진 상황임.
- 따라서 방송사업자의 편성의 자유 보장, OTT와의 규제 형평성 제고, 시청자의 특정 국가 콘텐츠 선택권 확대라는 측면에서 볼 때, 1개국 수입물 편성 비율 규제를 폐지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분야의 문화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작용하고 있는 1개국 수입물 편성 비율 규제 폐지 시 경쟁력이 높은 일부 국가의 콘텐츠 중심의 편성 집중이 심화되고, 소수문화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게 될 가능성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 정부 및 이해관계자 의견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동의) 1개국 수입물 편성 규제는 다양한 해외 문화의 공급을 위해 도입된 것이나, 해외 콘텐츠 이용 경로가 다원화됨에 따라 규제 필요성이 저하되었으므로 개정안에 동의함.
- (문화체육관광부: 신중검토) 문화다양성 확보와 시청자의 실질적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인 1개국 수입물 편성비율 상한 규제 완화에 반대함.
- (KBS: 동의) 미디어 이용환경 변화 및 콘텐츠 제작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특정 국가 제작물 편성비율 상한 규제가 문화적 다양성 증진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삭제하는 개정안에 찬성함.
- (MBN, 채널에이: 동의) 글로벌 콘텐츠 유통 환경 변화에 비추어 실효성이 감소하고 있는 특정 국가 영화·애니메이션 편성 규제 폐지에 찬성함.
- (한국방송협회: 동의) 오늘날에는 이용자들이 OTT와 전문채널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여러 국가의 콘텐츠를 이용하기에 특정 국가 콘텐츠 편중 문제는 방송사의 공급 측면의 문제가 아니므로 해당 규제를 삭제하려는 개정안에 찬성함.
- (한국독립PD협회: 신중검토) 특정국 수입물 상한 폐지 시 방

송사업자가 저렴한 해외 콘텐츠를 대량 편성할 것이고, 이에 따라 국내 제작인력의 기회 상실 및 창작 생태계 위축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반대함.

3.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 규제 완화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①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범위를 텔레비전방송 프로그램으로 한정하면서 영화는 제외하고, ②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 규제 대상을 지상파·종합PP로 한정하면서 DMB·지역방송사·지상파PP를 제외하는 등 순수외주제작물 편성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및 제3항).

현 행	개 정 안
제72조(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①방송사업자는 해당 채널의 전체 방송프로그램중 국내에서 해당 방송사업자나 그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u>방송프로그램(이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이라 한다)</u>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72조(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① <u>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u> ----- ----- <u>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u> (영화는 제외하며, 이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이라 한다)----- -----
<신 설>	--. 다만, 다음 각 호의 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신 설>	1.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u>지상파방송사업자</u>
<신 설>	2.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항제2호의 <u>지역방송사업자</u>
<신 설>	3. <u>지상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여 지상파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u>

현행	개정안
② 삭제 ③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주시 청시간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 야 한다. <단서 신설> ④ (생략)	③----- ----- ----- ----- -----, 다만, 제1항 각 호의 방송사 업자는 제외한다. ④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72조제1항은 방송사업자가 해당 채널의 전체 프로그램 중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¹¹⁾(이하 “순수제작물”이라 함)을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방송법 시행령」은 규제 대상을 지상파방송사업자, 지상파PP 및 종편PP로 한정하고, 반기별 텔레비전방송시간 기준 35% 이내에서 하한 비율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¹²⁾ 방미통위 고시에서 정한 비율은 다음과 같음.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9조제1항에 따른 비율>

방송사업자			순수외주제작물 편성 비율
지상파	KBS	제1채널	19 % 이상
		제2채널	35 % 이상
	MBC		30 % 이상
	지역MBC		20 % 이상**
	EBS		16 % 이상
	그 외	대규모*	30 % 이상
		일반	3.2 % 이상***
지상파PP			3.2 % 이상
종편PP			30 % 이상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이상인 지상파방송사업자(2026년 기준 SBS로 유일)

**지역MBC의 경우 한시적으로(2024.7.~2028.6.) 14% 이상으로 완화

***지역민방의 경우 한시적으로(2024.7.~2028.6.) 2.6% 이상으로 완화

11)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이란 국내에서 해당 방송사업자나 그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으로, 「방송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에 따르면 영화는 제외됨. 순수외주제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표준계약서를 이용해 계약을 체결하고, 외주제작사가 실질적 제작을 담당했으며, 방미통위 고시가 정하는 5가지 요건 중 3가지 이상을 갖추어야 함.

12) 「방송법 시행령」

제58조(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① 지상파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해당 방송사업자나 그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영화는 제외하며, 이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이라 한다)을 해당 채널의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방송시간의 100분의 35 이내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 또한, 현행법 제72조제3항은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청률이 높은 주시청시간대(평일 19~23시 및 토·일·공휴일 18~23시)에는 별도의 편성비율 하한을 두고 있음.

- 「방송법 시행령」은 반기별 주시청시간대 텔레비전방송시간의 15% 이내에서 하한 비율을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방미통위 고시에서 정한 기준 비율은 다음과 같음.¹³⁾

방송사업자	순수외주제작물 편성 비율 (주시청시간대)
지상파	10 % 이상
지상파PP(종합편성)	3 % 이상
중편PP	10 % 이상

○ 이러한 순수외주제작물 편성 규제는 채널을 운영·편성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¹⁴⁾가 기획·제작까지 독점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콘텐츠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영상 제작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2000년 통합 방송법 제정 이전부터 도입되어 운영되어 왔음.

13) 「방송법 시행령」

제58조(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③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해당 채널의 매반기 주시청시간대 텔레비전방송시간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9조(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②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종합편성을 행하는 당해 채널별 매반기 주시청시간대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10 이상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당해 채널별 매반기 주시청시간대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3 이상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14) 종전에는 규제 대상이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PP였으나, 2018년 12월 시행령 개정으로 중편PP까지 규제 대상이 확대되었음.

- 참고로, 최근 10년간(2016~2025년) 순수외주제작물 편성 비율
규제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는 총 2건임.
- 그런데, 콘텐츠 제작의 주도권이 지상파·중편PP 등 전통적 방송사에서 OTT와 대형 외주제작사(스튜디오)로 상당 부분 이전된 상황에서 기존의 순수외주제작물 편성 규제는 변화한 미디어 시장 환경에 부합하지 않으며 방송사업자의 편성의 자유만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순수외주제작물 편성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현행법은 순수외주제작물 편성 규제 대상을 모든 방송사업자로 포괄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그 범위를 일부 방송사업자로 한정하고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범위에서 영화를 제외하고 있는바,¹⁵⁾ 개정안은 규제 대상 및 범위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한편, 개정안 제72조제1항제3호는 편성 규제 대상 중 지상파PP는 시행령에 따른 규제 대상임에도 법률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15) 「방송법 시행령」

제58조(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① 지상파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해당 방송사업자나 그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영화는 제외하며, 이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이라 한다)을 해당 채널의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방송시간의 100분의 35 이내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데, 2026년 기준 지상파PP로 등록하였거나 최근 수년간 지상파 PP로 등록하여 운영한 사업자가 부재하여 해당 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둘째, 순수외주제작물 규제 대상에서 지역방송사¹⁶⁾를 일괄 제외하는 것이 지역 미디어 생태계에 가져올 파급효과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지역방송사 측면에서, 현재 규제 적용 대상¹⁷⁾인 ①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MBC)가 최다출자자인 지역 MBC(16개사), ②지역민영방송사(10개사) 등 총 26개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됨.

- 참고로, 방미통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지역 MBC의 순수외주제작물 편성 비율 평균은 26%를 상회했으

16)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방송”이란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거나 특별시 일부와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을 말한다.

17)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9조(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① 지상파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상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1. 한국방송공사. (각 목 생략)
2.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 (각 목 생략)
3. 제2호의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 해당 채널별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송사업자를 제외한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지상파방송사업자.
가. 지상파텔레비전방송: 해당 채널별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30 이상
5. 한국교육방송공사: 해당 채널별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16 이상
6.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당해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32 이상(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지상파방송사업자는 해당 각호에 따른다.) (후 략)

며¹⁸⁾, 지역민방의 경우에도 평균 20% 내외¹⁹⁾ 수준이었음.

- 광고매출 감소와 누적된 재정난으로 인해 자체 예산으로 순수외주제작물을 구매하여 조달하는 데에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지역방송사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임.
- 2025년 기준 지역MBC 16개사 중 영업이익을 기록한 곳은 목포MBC 1개뿐이었으며, 지역민방 10개사 중에는 KNN(부산경남방송), TBC(대구방송), JTV(전주방송) 3개사를 제외하고는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지역방송사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음.
- 한편, 지역방송사에 대한 순수외주제작 편성 규제가 방송사업자뿐만 아니라 영상제작사 등 지역 방송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지역방송사에 대한 순수외주제작물 편성 의무 배제 시 지역의 영세 영상제작사 또는 독립PD 등 지역 미디어 창작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지역 콘텐츠 자생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
- 다만, 2024년 기준 지역방송사가 편성한 순수외주제작물 중 직접 지역 제작사로부터 순수외주제작물을 구매하여 편성한 비율이 지역MBC의 경우 평균 2.2%, 지역민방방송사의 경우 평균

18) 지역MBC 16개사 평균: (2023년) 26.4% → (2024년) 26.5% → (2025년) 26.9%

19) 지역민방 10개사 평균: (2023년) 22.3% → (2024년) 19.9% → (2025년) 20.6%

9.67%에 불과하다는 점은 지역방송사가 직접 지역 제작사로부터 순수외주제작물을 구매하기보다는 순수외주제작물 비율을 맞추어 편성한 것을 그대로 수중계하여 송출하는 방식²⁰⁾으로 의무비율을 채워왔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개정안에 따른 실질적 충격은 비교적 제한적일 수도 있다고 보임.

20) 지역MBC의 경우 MBC로부터, 지역민방의 경우 SBS로부터 수중계하여 송출하고 있음.

다. 정부 및 관계 단체 의견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동의) OTT 등 외주 편성 플랫폼이 다양해지면서 제작산업이 성장하고 방송사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어 따라 규제 필요성이 저하되었으므로 개정안에 동의함.
 - 특히, 지상파DMB는 현재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지역 방송사는 대부분 수중계로 의무비율을 채우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지상파PP는 실제 존재하는 사업자가 없으므로 개정을 통해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 신중검토)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 편성은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존립의 기반이자 공정한 산업환경 조성 및 콘텐츠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정책으로, 규제 완화에 반대함.
 - 또한, 의무편성 규제가 방송영상콘텐츠에 대한 시청자 선택권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외주제작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이고, 해당 규제 완화 시 지역 영세 제작사 및 독립PD 등 지역 창작 생태계 붕괴가 우려됨.
- (KBS: 신중검토) 방송사와 대등하거나 우월한 협상력을 가진 소수의 대형 제작사가 등장함에 따라 방송사의 경영·제작상 유연성을 제한하고 있는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 규제 필요성에 대해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함.

- (TJB²¹): 동의) 지역방송의 제작 여건 및 경영 현실을 고려한 제도개선으로 판단되어 개정 취지에 공감함.
- (광주방송²²): 동의) 과거 국내 방송·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상파방송에 부여된 순수외주제작은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지상파방송사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찬성함.
- (채널에이: 신중검토) 방송산업 환경, 제작시장 여건에 따라 적용 대상과 운영방식 조정이 필요할 것이므로 순수외주제작 편성 규제 대상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제도 운영의 탄력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TV조선: 신중검토) ①국내 방송산업 악화는 일부 사업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②지상파(평균 33.19%)와 종편PP(평균 54.79%)는 법정 의무비율인 30%를 크게 상회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규제 대상으로 남기고 일부 사업자만을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불합리하며, ③최근 방송콘텐츠 시장은 스튜디오 중심 제작 생태계로 전환되는 만큼 외부 제작 역량과의 협업 없이는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기 어려운 구조로 더 이상 순수외주제작 편성규제 실효성이 없으므로 개정안에 반대함.

21) 지상파방송사업자 중 지역민영방송사

22) 지상파방송사업자 중 지역민영방송사

- (한국방송협회: 신중검토) ①경영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지상파방송사에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을 의무화할 경우 방송사의 편성 및 경영 자율성을 제약하고, ②제작·공급 시장의 경쟁을 왜곡할 우려가 있으며, ③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OTT 등 사업자와 형평성 문제가 초래될 것이고, ④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공급가격 상승 부담이 방송사에 전가되어 공정한 경쟁 환경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 규제를 계속 적용하려는 개정안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신중검토) 지역방송사업자에 대한 의무편성비율은 완화된 상태이고, 지역방송사 입장에서조차 제작역량과 비용 절감 차원에서 외주제작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개정안에 따라 지역 제작사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지역방송사업자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에 반대함.
-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신중검토) 순수외주제작 의무편성규제는 독립제작 생태계 유지와 콘텐츠 다양성 확보에 핵심적인 정책 수단이고, 지역 기반 제작사의 위축 및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규제 완화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226